

# 생동교회 정관(안)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동교회(生動教會 Livingstone Church)” 라 칭한다.

### 제 2 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2길 20(우면동 693)에 위치한다.

### 제 3 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합동) 남서울노회에 둔다.

### 제 4 조 (근원)

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준하여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과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본 정관의 근거 원칙으로 한다.

### 제 5 조 (목적)

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구약 성경을 신앙생활의 본질로 삼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선교와 거룩한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①하나님사랑 이웃사랑 ②땅끝까지 복음전파 ③시대를 이끄는 인재양성 ④은사 중심의 팀 사역에 헌신한다.

### 제 6 조 (비전)

본 교회의 비전은 성도들을 말씀사역자로 양육하여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여 교회와 사역의 주체로 세워 능동적인 예배, 영혼을 살리는 전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 지역사회에 봉사,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헌신한다. 우리는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헌신하는 공동체이다.

## 제 2 장 교회의 정신

### 제 7 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이며, 성경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 제 8 조 (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생동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 제 9 조 (복음적 분업)

1. 교회 운영의 주체는 교인이며, 개교회의 독립과 자치를 준수한다.
2. 모든 교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한다.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 한다.

## 제 3 장 교 인

### 제 10 조 (교인의 자격)

1.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2. 교인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3.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 11 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예배, 선교, 교육, 구제와 성례와 헌금의 의무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 운영과 활동에 솔선하여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 제 12 조 (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결권 및 선거권은 세례교인(입교)에게 부여되며, 피선거권은 등록(세례교인 이상)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 제 13 조 (담임목사)

1. 본교회의 목회를 총괄하는 목사이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집전 등을 의미한다.
3. 본 교회 담임목사는 시무 매 3년째 해의 9월중에 재신임 투표를 하며,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5. 담임목사는 1년 시무 후, 매 1년 당 2주의 안식기간을 갖는다. 또한, 3년 시무 후 3개월의 안식기간을 가진다. 연임의 경우 매 6년 종료시점에 6개월 간의 안식기간을 갖는다. 단, 안식기간의 시점은 담임목사와 당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① 안식기간의 사례비는 종전대로 한다.

- ② 안식기간 중 연구나 학업이 목회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그 비용을 교회가 부담할 수 있다.
- 6.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 ① 담임목사 본인이 사의를 표한 경우
  - ② 은퇴는 총회법대로 하되 만65세에 조기 은퇴할 수 있다.
  - ③ 공동의회에서 시행하는 재산임 투표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 7.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
  - ① 당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청빙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들의 서류를 검토하여 면접한 후, 3명으로 후보를 확정 한다.
  - ③ 면접을 통과한 각 후보자의 2회 이상의 설교를 듣고, 청빙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14 조 (부사역자)

1.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부사역자를 둘 수 있다.
2. 부사역자는 사역의 범위에 따라 전임사역자와 비전임사역자로 구분한다.
3. 부사역자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결정한다.

#### 제 15 조 (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총무국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 제 4 장 심의 및 의결기관

#### 제 16 조 (공동의회)

1. 기능 :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한다.
2. 구성 :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입교)으로 한다. 회 의장과 서기 1인을 두고, 회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3. 소집 및 회기 :
  - ①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 ②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한다.

- ③ 임시회는 의장, 당회, 운영위원회, 혹은 등록교인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후보 및 게시관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의결 : 모인 수를 정원으로 하여 목사청빙과 장로, 집사 및 권사를 선거할 때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 외의 일반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헌법 공동의회 5항)**
- 5. 직무
  - ① 담임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운영위원장, 각 국장의 선임투표
  - ② 각종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④ 감사의 보고 청취 및 승인
  - ⑤ 교회 정관 및 시행규정의 제정과 개폐
  - ⑥ 기타 주요 안건 등이다.

#### 제 17 조 (당회)

본 당회의 조직은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고 담임목사를 당회 의장으로 한다. 정기당회는 연2회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협법정치 제9장 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 1. 예배와 성례를 관장한다.
- 2. 권징과 시상을 실시한다.
- 3. 노회에 총대 파송과 청원 및 교회 상황을 보고 한다.
- 4. 교회의 재산권(부동산)을 행사한다. 단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5. 교인의 입퇴회와 신앙행위를 총찰하고 신령적 유익을 관장한다
- 6. 인사를 관장한다.(항존 직원 세움과 서리집사 임명과 부서를 관장한다)

#### 제 18 조 (운영위원회)

- 1. 기능 :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일반 행정 업무를 관장한다.
- 2. 구성 : 운영위원장, 사역자회의 대표, 각 국장, 캠프장회의 대표, 청년회 대표, 남녀 선교회장단 대표로 구성 한다. 단, 각 국의 경우, 사정에 따라 팀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당회 서기는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 3. 직무 :
  - ① 교회의 정책적 사안을 심의하여 중요사항은 당회에 보고.
  - ② 정관과 규칙 개정안 심의

- ③ 예결산 심의
  - ④ 교회 행정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 ⑤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4. 소집 및 회기
-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며 당회, 운영위원장, 감사,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임시회로 소집한다.
  - ② 전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비공개 결의가 없는 한 공개된다. 비공개 결의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운영위원장 :
-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국간 이견의 조정 등의 책임을 맡는다.
  - ② 운영위원장은 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연임 후 재선출 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장이 공석 일 때에는 사유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재선출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잔여기간 동안 그 임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제 19 조 (국의 임무)

교회의 사역을 위해 국을 두며, 국은 관할내의 행정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국 - 예배와 성례, 새가족에 관한 사항
  - ① 예배팀 : 예배 기획, 순서 담당자 선정, 주보제작,
  - ② 새가족팀: 안내, 등록 교인의 교회 정착 도움 및 교육
  - ③ 찬양팀 : 주일예배, 특별예배 등과 관련된 예배음악 담당
  
2. 선교국 - 국내, 지역 전도와 해외 선교에 관한 사항.
 

(선교 전략 수립, 전도 활동 수행 및 평가 등)

  - ① 국내 선교팀 : 지역 전도, 농촌 선교, 문화선교 사업.
  - ② 해외 선교팀 : 선교사와 선교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 ③ 오픈북팀:p국 선교에 대한 지원사업.

3. 구제국 - 국내외 복지사업과 대내,외 봉사에 관한 사항.
  - ① 국내외 구제팀 : 국내외의 각종 구제에 관련한 사업.
  - ② 대외봉사팀 : 교회와 대외적인 구제 및 봉사에 관련한 사업.
  - ③ 경조팀 : 경조 규정에 따른 적용
  
4. 재정국 - 재정에 관한 사항
  - 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② 현금 수납 및 지출
  - ③ 재정상황을 정기 제직회시에 보고 한다
  
5. 총무국 - 교회의 사무와 관리, 미디어 사역에 관한 사항
  - ① 봉사팀 : 주방 관리와 각종 행사의 지원.
  - ② 시설관리팀 : 각종 문서의 보관, 교회 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 관리
  - ③ 미디어 사역팀 :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및 기타 미디어 제작과 지속적 유지 관리
  
6. 교육국 - 교육부서에 관한 모든 사항
  - ①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유치부, 유아부 등의 교육 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교육부서는 사역자회의 지도를 받는다.
  - ③ 각 교육부장은 사역자회에서 추천하고 당회에서 임명한다.
  - ④ 각 교육부서의 부장 및 사역자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매 월 정기 회의로 모인다.
  - ⑤ 교육위원장은 교육국장이 겸임한다.
  
7. 국장, 팀장
  - ① 국장은 각 국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 ② 각 국은 팀장을 두어 국장의 업무를 돕게 한다.
  - ③ 각 국장은 매년 11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④ 국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각 국의 팀장은 해당 국장이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20 조 (국 업무의 조정 및 위임)

1. 각 국의 업무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국의 통상적 업무는 국의 자율로 시행한다.

- ② 긴급사안의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당회에 보고한다.
- 2. 각 국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타 국에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사안의 조정을 결의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국을 신설, 폐지, 분할, 통합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 4. 운영위원회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임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 제 21조 제직회

- ① 구성 : 당회원과 향존직원과 사역자와 서리집사로 구성하되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 ② 성수 :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일반적인 결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③ 업무 : 공동의회에서 위임된 재정을 처리하되 재무국이 관장한 재정 보고를 청취한후 심의 결정 한다
- ④ 회의 : 정기제직회는 3월, 9월, 12월에 하되 재무국과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 제 5 장 자치 기관

### 제 22 조 (자치기관)

교회는 사역자회, 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직능별, 성별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 1. 사역자회:
  - ①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 ② 사역자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 2. 전도회 : 연령별 또는 성별로 전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청년회 : 청년으로 구성한다.
- 4. 학생회 :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하되, 해당 사역자의 지도를 받는다.
- 5. 기타 신앙증진, 교우간 교제, 사회봉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23 조 (캠프)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나누며 서로를 세우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써 하나님나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 한다.

1. 캠프장은 각 캠프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당회에서 확정한다.
2. 캠프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제 6 장 재정 및 재산

### 제 24 조 (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한 해의 예산 편성은 선교와 구제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다.
2. 결산은 반드시 감사를 받는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 제 25 조 (수입)

본 교회의 재정은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 26 조 (재정사용)

본 교회 재정은 재정운영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며, 본 교회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 27 조 (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2. 재정국은 정기 제직회(3월, 6월, 9월, 12월) 시에 재정상황을 보고한다. 매년 결산에 대하여는 교회의 홈페이지에 결산서와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어야 한다.
3.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해 해당 교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국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 제 28 조 (예결산 편성위원회)

예산은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립한다.

1. 구성 : 당회 서기, 운영위원장, 재정국장 및 교인 중 재정 관리나 회계에 전문 지식을 가진 2인을 당회에서 추천받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한다.
2. 담임목사가 제시하는 예산년도의 목회계획서를 근거로 각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수립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제 29 조 (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총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3.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합산 금액 오백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4.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반환을 요구할시 즉각 응해야 한다.

### 제 30 조 (사역자의 보수)

1.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 등 사역자의 보수는 교회 보수규정에 따른다.
2. 호봉 및 초임은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2. 사역자 및 사무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법률이 정한 사용자측 부담금을 교회가 부담한다. 단 사역자는 목사, 전도사, 파송선교사를 말한다.

### 제 31 조 (결산 및 감사)

1. 결산은 각 국과 재정국이 함께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같이 당회에 보고하고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감사
  - ① 감사는 3인으로 하며, 교인 중에서 업무와 재정운용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로, 당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감사 결과를 당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권 징

### 제 32 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법에 근거 한다.

## 제 8 장 교회 분립

### 제 33 조 (분립)

본 교회는 복음 전파의 목적과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교인이 7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 분립을 위한 추진기구로 `분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분립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은 분립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가 최종안을 검토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공동의회에서 확정 시행한다.

## 제 9 장 부 칙

### 제 34 조 (정관의 변경)

- ①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본 정관은 통합정신에 의한 정관이므로 본래의 정신에 의하여 향후 3년 내에는 변경하지 못한다(단, 내용의 변경이 아닌 자구수정은 할 수 있다)

### 제 35 조 (시행규칙)

본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36 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